

202.48호

### 행정명령

####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모든 주 비상시 기관의 법령,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 또는 보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중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행정명령 202.27호, 202.28호, 202.38호에서 지속되고 포함된 바와 같이 행정명령 202호 및 행정명령 202.14호까지를 포함하는 각 후속 행정명령으로 발령된, 후속 지침에 의해 대체되지 않은 법률 및 모든 지침의 일시 중지 및 수정 조치를 다음을 제외하고 2020년 8월 5일 수요일까지 30일간 더 연장합니다.

- 다음 법령 및 규정 및 다음 지침의 일시 중지 또는 수정은 계속되지 않으며, 2020년 7월 7일 화요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령, 법규 및 규정은 완전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 교육부 커미셔너가 교육 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한 교육법(Education law)의 제3604(7)항 및 모든 관련 지침은 그러한 일시 중지 및 지침이 2020년 법률(Laws of 2020) 107장에 포함된 법령으로 대체됨에 따름.
  - 공사 중지 비상사태 중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관할 하에 제공자가 정신보건국 또는 프로그램 또는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개인을 수송하도록 직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정신위생법(Mental Hygiene Law) 제33.17항 및 관련 규정의 일시 중지.
  - 기관예산청(Authorities Budget Office) 청장이 주 또는 지방 당국이 적절히 시행된 비상사태 선언이 발행된 기간 중 이 조항들 내에 금지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인하여 해당 기한을 무시하도록 허가하는 데 필요하며 일치하는 범위까지 공공기관법(Public Authorities Law) 제2800(1)(a) 및 (2)(a), 2801(1) 및 (2), 2802(1) 및 (2) 및 2824(2)항은 주 또는 지방 당국에 해당 신고를 위한 법으로 명시한 기존의 기한에서 60일간 연장을 허가하는 한에 있어서만 지속됩니다.
  - 사회보장서비스법(Social Services Law) 390-b항 및 뉴욕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18장의 제413.4항 및 제415.15항의 규정.
  - 선거법(Election Law) 제8-407항의 세부조항 8.

- 허가가 있으며, 수석 행정 판사에 의해 법원이 직접 출두를 시작할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관할권에서 피고의 직접 출두를 요구하는 범위까지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Law)의 일시 중지. 법률의 다음 조항에 대한 일시 중지 또는 수정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50.40항은 이로써 출두 소환장(desk appearance ticket) 출두 날짜의 20일 기간이 출두 소환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로 연장되도록 수정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190.80항은 예심 또는 포기 후 대배심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45일의 기한이 계속 일시 중지되고 추가로 30일 더 중지되도록 수정됩니다.
  - 형사소송법의 제30.30항은 형사 소배심원단이 재소집되는 시점 또는 30일 중 늦은 시점까지 신속 재판 시간제한이 일시 중지될 것을 요구하도록 수정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특정 항변에 대한 전자 출두의 사용을 금지하는 범위까지 이로써 일시 중지되며, 법원이 포기 및 그 자발성에 대해 완전하고 명시적인 조사를 할 경우에 한합니다.
  - 형사소송법의 제190.45항 및 제190.50항은 피고가 그렇게하기로 선택한 경우, 수감된 피고가 면책을 포기하고 자신의 답변을 증언하기 위해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대배심 앞에 가상으로 출두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수정됩니다.
  - 행정명령 202.28호에 의해 수정된 바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제180.80호 및 제190.80호의 일시 정지는 이로써 선정된 대배심이 없는 모든 관할권에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새로운 대배심이 형사 사건을 청문하기 위해 선정되면 형사소송법 180.80 및 190.80은 해당 대배심이 선정된 후 일주일 후부터 더이상 일시 중지되지 않습니다.
  - 행정명령 202.28호에 의해 수정된 바에 따른 예심에서 보호 명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형사소송법 제180.60항 및 제245.70항의 일시 중지는 이로써 30일 동안 계속됩니다.
  - 또한 형사소송법 제182.30항의 행정명령 202.28호에 포함된 수정 외에 제182.20항의 일시 중지는 중죄 항변에 대한 전자 출두 또는 예심 또는 처분 관정에 전자 출두의 사용을 금지하는 범위까지 이로써 30일 동안 연장됩니다.
- 2020년 법률 122장에 포함된 바와 같이, 이러한 일시 중지가 법령에 의해 대체된 바와 같이 기업법(Business Corporation law) 제602, 605 및 708항.
- 2020년 법률 112 및 126장에 포함된 법령뿐 아니라 행정명령 202.9호에 포함된 지침에 의해 해당 일시 중지가 법령으로 대체된 바와 같이 은행법(Banking Law Section) 제39(2)항.
- 감독관의 비상 규정의 만료와 일치하는 행정명령 202.13호에 의해 일시 중지된 보험법(Insurance Law) 및 은행법 조항.
- 세법(Tax Law) 제171항의 세부조항 (28), 커미셔너가 모든 신고 기한을 연장한 범위까지.
- 관련 비상 규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법의 제3216(d)(1)(c)항 및 제4306(g)항 및 행정명령 202.14호의 지침에 의해 제공된 모든 관련 규제 당국.
- 임대료 미납 또는 모든 주거 또는 상업 담보 대출의 담보권 행사에 대해, 그러한 담보 대출의 미납에 대해 주거 또는 상업 임차인의 퇴거 절차 또는 시행의 개시를 금지한 연장된 바에 따른 행정명령 202.28호에 포함된 지침은 계속되나, 2020년 법률 112, 126 및 127장에서 주거 임차인 및 주거 저당권 설정자에 대한 법률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상업 임차인 또는 상업 저당권 설정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최근 연구결과 및 미국 식품의약국(Food & Drug Administration,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철회가 이러한 약물의 허용된 식품의약국 사용을 위한 공급 부족을 완화하였으므로, 행정명령 202.11호에 의해 개정된 바에 따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또는 클로로퀸 조제와 관련된 제한과 관련된 행정명령 202.10호에 포함된 지침.
- 동영상 복권 게임이나 카지노 게임,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또는 수업, 영화관을 폐쇄한 행정명령 202.3호에 포함된 지침 및 개정된 바에 따라 소매 쇼핑물의 실내 공용 부분 및 실내의 공공 놀이시설을 폐쇄한 행정명령 202.5호에 포함된 지침은 향후 이를 개장하는 행정명령 발행 시점까지만 해당 지침이 효력을 유지하도록 수정됩니다.

또한 본인은 다음을 2020년 8월 5일까지 30일 동안 일시 중지 또는 수정합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간접적 경제적, 재정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뉴욕주 금융법(State Finance Law) 제11-A항 및 제11-B항 및 그에 따라 허가된 모든 규정.

또한, 재난 비상사태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지침도 발행할 수 있는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해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8월 5일 수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행합니다.

- 행정명령 202.41호에 포함된 지침으로, 적격 지역에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결정한 바에 따른 3단계 산업 또는 독립체의 비필수 기업 또는 기타 독립체의 대면 인력에 대한 감소 및 제한을 중단한 지침은 뉴욕시에서 실내 음식 서비스 및 식사를 계속 금지하는 범위까지만 이로써 수정됩니다.

2020년 7월 6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